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외국인 확대, 불법체류 아동 관련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 확대 및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에 대한 허용업종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확대(안 제15조 제4항)

-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나 외국인은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여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비대면 심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등록심사대 이용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연령을 7세 이상으로 하향

나. 불법체류 아동 관련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 확대(안 제92조의2)

- 현재 학교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공무원은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유아 교육기관이나 아동 보호기관 등 종사 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통보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 아동의 안정된 성장과

생활 지원을 위하여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 확대

다.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활동범위 확대(별표1의2, 별표1의4)

-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국적 신청자인 동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동거(F-1) 자격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설(별표1의2)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설

마. 특별기여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규정 마련(별표1의3)

-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특별기여자”)이 안정적인 법적 지위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7세 이상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7세 이상으로 다음”으로 하며, 같은 목 각 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제23조제2항제1호 중 “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 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행위도 할 수 있다.

제40조의3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이 법 제35조제1호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사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

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전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이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2조의2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별표 1의2에 제24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란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5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 중 “(E-7)까지”를 “(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으로 하며, 같은 표 제26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 중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제29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9. 방문취업 (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활동범위

-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 가) 작물 재배업(011)
 - 나) 축산업(012)
 -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라) 연근해 어업(03112)
 - 마) 양식 어업(0321)
 - 바) 금속 광업(06)
 - 사)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 아) <삭제>
 - 자)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 차) 제조업(10 ~ 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카) <삭제>
 - 타) <삭제>
 - 파) 건설업(41 ~ 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하) ~ 루) <삭제>
-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서비스업(대분류 E, G~U)의 경우 다음 산업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 가) 수도업(36)
 - 나)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 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 라)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다만, ‘육상 여

	객 운송업'(492)는 허용한다. 마) 수상 운송업(50) 바) 항공 운송업(51) 사)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다만, '냉장·냉동창고업*(5210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은 허용한다. *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출판업(58).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 자) 우편 및 통신업(61) 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카) 정보서비스업(63) 타) 금융업(64) 파) 보험 및 연금업(65) 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거) 부동산업(68) 너) 연구개발업(70) 더) 전문 서비스업(71) 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다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한다. 버)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서) 교육 서비스업(85)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입국심사) ① ~ ③ (생략)	제15조(입국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 ----- ----- -----, ----- ----- ----- ----- ----- ----- -----.
1. <u>17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일 것	1. <u>다음</u> ----- ----- -----
가.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단서 신설>	가. <u>7세 이상으로 다음</u> ----- -----, <u>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u>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⑤ ~ ⑩ (생략)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3. (생략)

③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과목 -----

2. 3.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 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생략)

<신설>

<신설>

-----.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

2. (현행과 같음)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생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파. 지역, 취업업종,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취업 및 그 기간 등 법무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
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
-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
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
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
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
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삭제>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파. 지역, 취업업종,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취업 및 그 기간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의3에 19.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란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마목 전단 중 “받은”을 “한”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받은”을 “한”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제2호 차목의 경우에는 1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취업(H-2) 활동범위에 관한 특례) 방문취업(H-2)의 활동범위

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지제1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제1의4를 적용한다.

[별표 1의4]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9. 방문취업 (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금속 광업(06)

사)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아) <삭제>

자)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차) 제조업(10 ~ 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파) 건설업(41 ~ 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거)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너) 과실류 도매업(46311).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더) 채소류, 서류(薯類)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러) 생활용품 도매업(464)

머)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버)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서)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어)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저) 무점포 소매업(479)

처) 육상 여객 운송업(492)

커)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터)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퍼)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송하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 호텔업(55101)

고) 여관업(55102)

노) 휴양콘도 운영업(55103)

도) 외국인 음식점업(5612)

로) 한식 음식점업(5611)

모) 기관 구내식당업(56130)

보)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오)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조)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초)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코)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토)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포) 사회복지 서비스업(87) 호)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구)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누)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두) 옥탕업(96121) 루) 산업용 세탁업(96911) 무)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부) 가구 내 고용활동(97)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4116